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219
--------	--------	-----

제출년월일 : 1996.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사회과소관 업무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의료보호업무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을 증진해 나가고자 불임과 같이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불임과 같이 심의의결을 요구함.

2. 주요골자

사회산업국 사회과소관 사무중 "의료보호대상자증명(의료보호증)에 관한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

과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과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위임사무명중 사회과소관 란의 일련번호 “제5호” 다음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6	○ 의료보호대상자증명 (의료보호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의료보호증 년도별 재사용 확인 ②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③ 의료보호증 회수	○ 의료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의료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8조 제2항 ○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9조	읍면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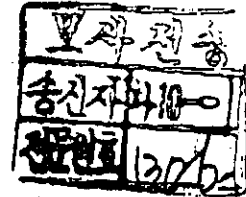
신 구 조 문 대 비 표

(사회과 소관)

인 원 번 호	원		행		개			비 고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 거 법 규	
1	0 이·미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미용업 신고 (휴·폐업, 재개업) ② 이·미용업 신고 사항 변경 ③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④ 행정처분	공중위생법 제4조및 제10조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24조	읍 민		(현행과 같음)		
2	0 유기장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유기장업 허가 (휴·폐업, 재개업) ② 유기장업허가사항 변경 ③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④ 행정처분	동법 제4조및제10조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23조	읍 민		(현행과 같음)		
3	0 목욕장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목욕장업 신고 (휴·폐업, 재개업) ② 목욕장업신고사항 변경 ③ 영업자 지위승계 ④ 행정처분	동법 제4조및제10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23조	읍 민		(현행과 같음)		

일련 번호	현			행		개			비 고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입기관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수입기관	
4	0 여인숙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여인숙업 신고 (휴·폐업, 재개업) ② 여인숙업신고사항 변경 ③ 영업지 지위승계 신고 ④ 행정처분	공중위생법 제4조및 제10조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24조	읍 민		(현행과 같음)			
5	0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매장, 화장, 개장 신고 ② 공설매장, 화장 및 납골증명	매장및묘지등에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	읍민동		(현행과 같음)			
6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0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의료보호 증)에 관한 디 습의 권한	① 의료보호증년도별 제사용 확인 ②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③ 의료보호증 회수	의료보호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의료보호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4조 제2항 의료보호법시행 규칙 제9조	읍면동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 도모

경 기 도



우 441-701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 층 42-5100(2421)/FAX:42-2338 행)5827 담당: 김향자

문서번호 보건 65730 - 3724

시행일자 1996. 9. 4. (3년)

(경 유)

발 음 받는곳 참조

참 조

선결	과장	주동	지시	
접수	일자 시간	96.9.4	결재	계장
	번호	3360		한
처리과	사회과			
담당자	이현주			

제 목 의료보호증의 발급 및 재발급등 권한의 읍·면·동 위임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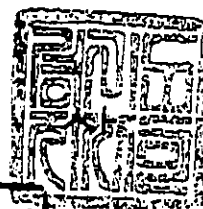
1.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료보호증의 발급 및 재발급 의료보호증의회수, 년도별 재사용확인, 거주지 변경확인, 의료 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등은 주민이 거주하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처리함이 주민편의 도모면에서 효율적임에도 일부 현행시장·군수에게 직접 받아야하는 불편이 있음으로

2. 의료보호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코저하니 각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에게 위임무를 위임토록 권고하며

3. 양평군에서 읍·면에 위임한 조례 사항을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1부. 끝.

경 기 도 지



보건국장전결

받는곳 : 러(사회과장)

양평군의회 제5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양 평 군 수 121 186 

1996년 3 월 20 일

양평군조례 제 142호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의 위임사무명 보사행정중 일련번호 제8호 다음에 제9호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 기관
9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의료보험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의료보호중 년도별 재 사용 확인 2. 의료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 3. 의료보호중 회수	· 의료보호법 제7조및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의료보호법 제7조 ·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및 제8조 제2항 · 의료보호법시행규칙제9조	읍면 읍면 읍면

파주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개정에 따른 자료

□ 의료보호대상자 현황

- 총 인원 : 3,103원
 - 1종 : 1,948명 (거택보호자 및 유사자 1,634명
국가유공자 314명)
 - 2종 : 1,155명 (자활보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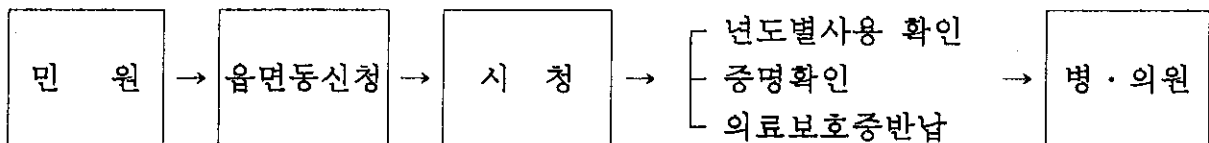
- ※ 의료보호대상자 비율
 - 생활보호(거택·자활) 대상자 : 90%
 - 국가유공자 : 10%

□ 의료보호대상자중 장애인 및 노쇠자(65세이상) 현황

- 장애인 : 231명
- 노쇠자 : 659명 (장애인·폐질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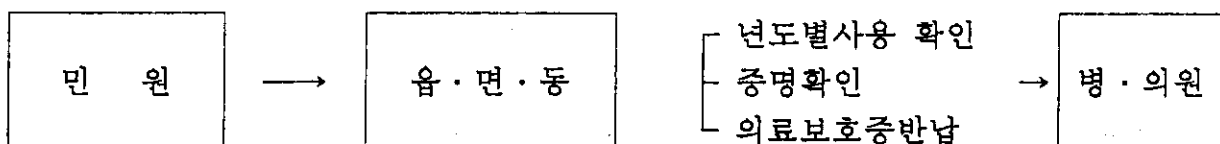
□ 민원처리절차

【법적절차】



※ 처리기간 : 읍면동제출후 2~3일

【개정 후】



※ 처리기간 : 확인후 즉시